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견제시년월일	2020. .

의견제시

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

구 미 시

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0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태풍,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,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
- 자연재해는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경향을 나타내므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, 태풍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와 동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재해발생시 지역과 중앙정부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2013. 12월 구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
-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유형이 확대되어 기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,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안)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

2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안) 주요내용

가. 과업개요

- (공간적 범위) 관내 전역 $A=615.29\text{km}^2$, 하천연장 $L=409.68\text{km}$
 - (시간적 범위) 목표연도 2030년
 - (대상재해 범위) 하천, 내수, 사면, 토사, 바람, 가뭄, 대설, 기타재해
- * 2019.11 세부수립기준 개정 반영

나. 저감대책 수립(안)

- (자연재해위험지구) 64개소
- (총사업비) 3,388억원 *매칭사업(5:5)
- (시행계획) 2021년 ~ 2030년

다. 관련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)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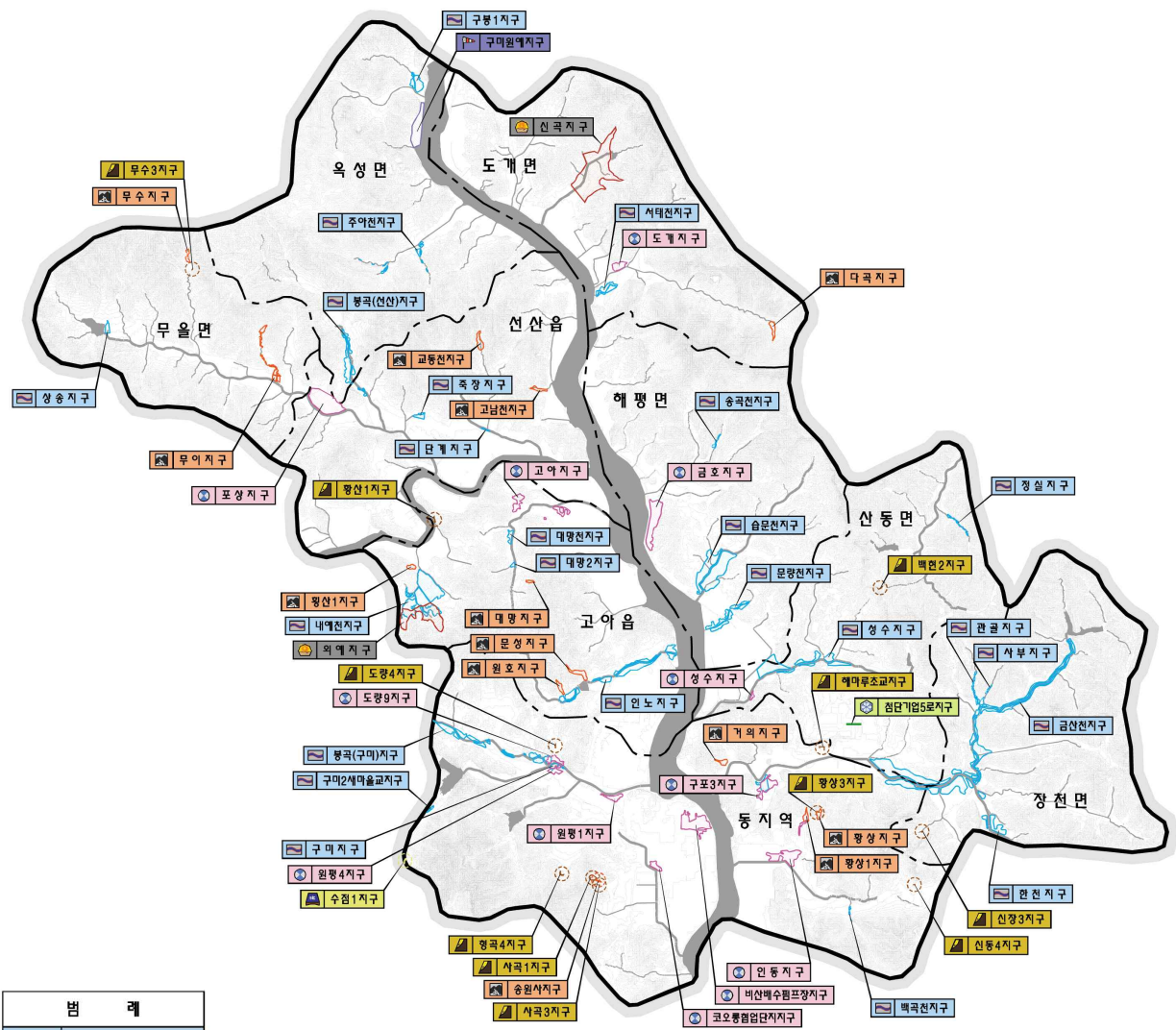
1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
2.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
3.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
4.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

라. 읍·면·동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(안)

- (예비후보지 선정) 읍면동, 이·통장, 관련부서 설문 및 탐문 조사
- (후보지 선정)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
- (위험지구 선정) 관련실과 협의 후 저감대책 수립

구 분		계	하 천	내 수	사 면	토 사	바 랍	대 설	가 목	기 타
계	예비후보지	1,926	911	195	124	337	40	70	29	220
	후보지	452	188	72	73	85	11	7	6	10
	위험지구	64	24	12	10	13	1	1	2	1
선산읍	예비후보지	187	103	16	9	31	10	1	6	11
	후보지	51	13	12	5	15	6	-	-	-
	위험지구	6	3	1	-	2	-	-	-	-
고아읍	예비후보지	191	119	13	3	29	3	-	5	19
	후보지	64	36	12	2	10	-	-	1	3
	위험지구	11	4	1	1	4	-	-	1	-
무을면	예비후보지	154	54	-	5	56	4	1	5	29
	후보지	42	14	-	4	23	-	-	-	1
	위험지구	4	1	-	1	2	-	-	-	-
옥성면	예비후보지	154	54	-	6	71	2	-	4	17
	후보지	33	10	-	5	14	1	-	-	3
	위험지구	3	2	-	-	-	1	-	-	-
도개면	예비후보지	133	53	8	5	37	6	1	2	21
	후보지	21	5	7	5	2	-	-	2	-
	위험지구	4	1	1	-	1	-	-	1	-
해평면	예비후보지	130	48	9	8	36	5	1	2	21
	후보지	15	7	2	2	2	1	1	-	-
	위험지구	4	3	1	-	-	-	-	-	-
산동면	예비후보지	164	87	9	8	9	3	16	-	32
	후보지	42	28	2	4	4	1	2	-	1
	위험지구	5	2	1	1	-	-	1	-	-
장천면	예비후보지	210	86	42	13	14	4	-	5	46
	후보지	51	22	11	9	4	2	-	3	-
	위험지구	4	3	-	1	-	-	-	-	-
동지역	예비후보지	606	307	98	67	54	3	53	-	24
	후보지	133	53	26	37	11	-	4	-	2
	위험지구	23	5	7	6	4	-	-	-	1

마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안)



범례	
	하천제에 위험지구
	내수제에 위험지구
	사면제에 위험지구
	토사제에 위험지구
	바람제에 위험지구
	가뭄제에 위험지구
	대설제에 위험지구
	기타제에 위험지구

소 관 부 서		안전재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재 범
	담 당	이 재 봉
	담 당 자	김 성 훈 (480-6742)